

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210호

**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이태모 의원 등 4명
제출연월일	2023. 11. 15.

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	제210호
--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15.

대표발의자 : 이태모

공동발의자 : 장진호, 홍태의
허명숙

1. 제안이유

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독서의 달 운영(안 제2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3조

나. 입법예고 : 2023. 11. 15. ~ 11. 19.(5일간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,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(독서의 달 운영)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이태모 의원 등 4명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29조(독서의 달 운영)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</u></p>
<u>제29조 (생 략)</u>	<u>제30조 (현행 제29조와 같음)</u>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독서문화진흥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